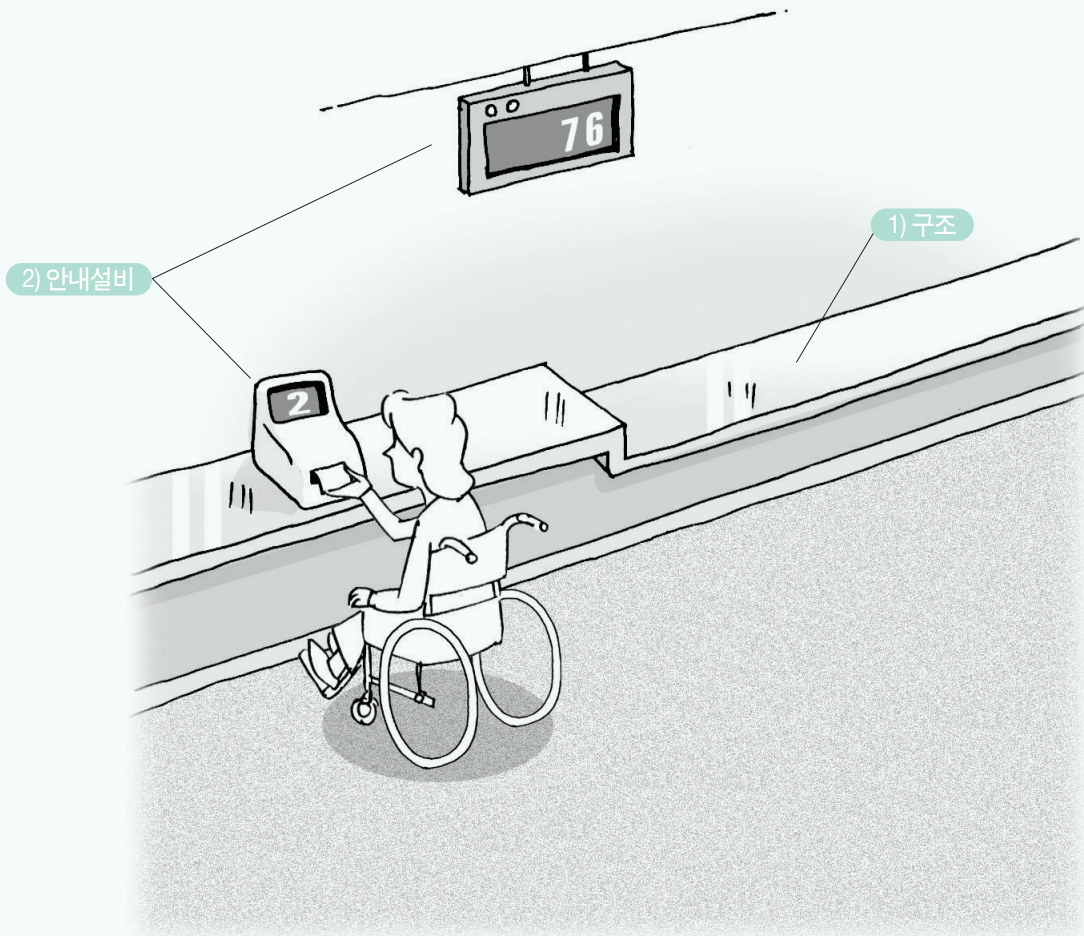


## 17. 접수대 및 작업대



### ■ 설치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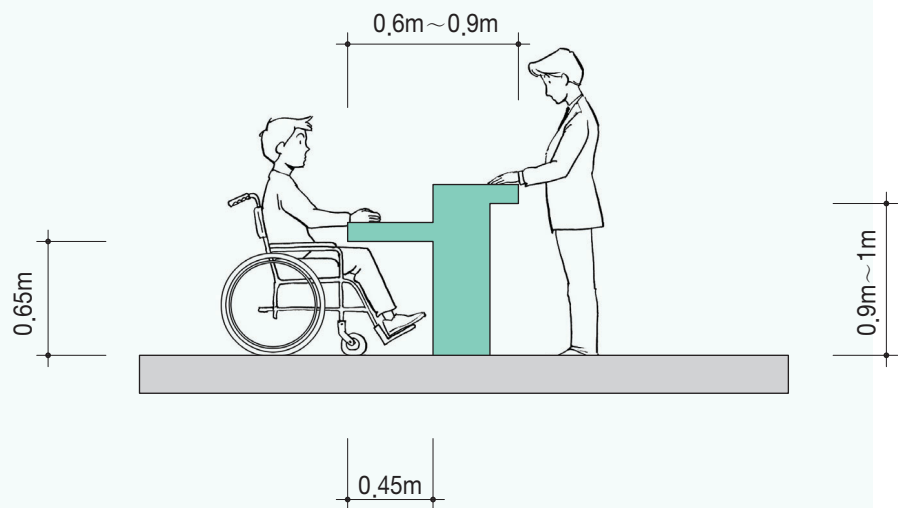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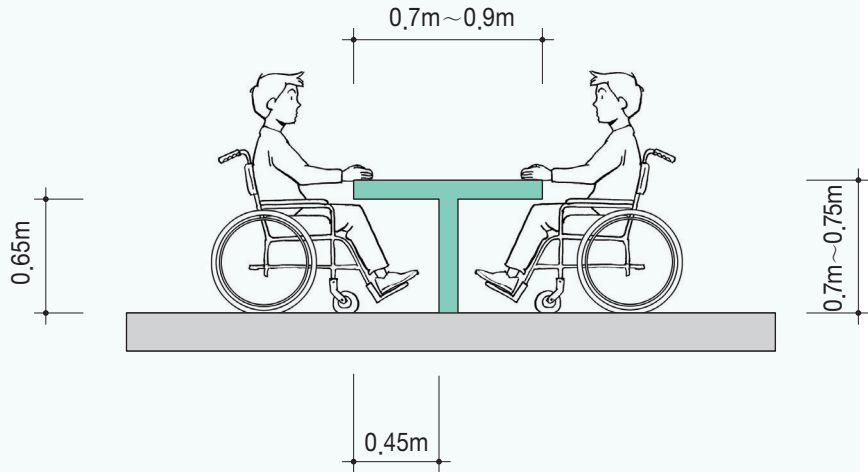
휠체어사용자가 접수대 및 작업대에 앉아 기록 등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.

### ■ 설치요점

-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음성 및 문자호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.
- 관공서 등 공공시설의 각종 안내는 반드시 음성안내와 문자안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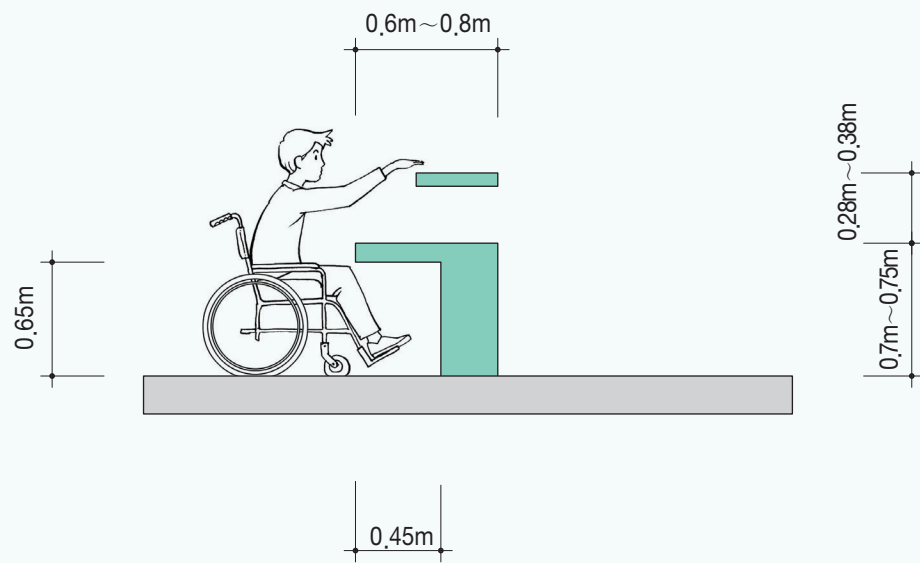
## 1) 구조

- 접수대 또는 작업대 상단까지의 높이는 0.7m~0.75m이하로 해야 한다.
-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는 바닥면으로부터 0.65m이상 높이를 유지해야 하고, 접수대 등의 전면으로부터 0.45m이상 깊이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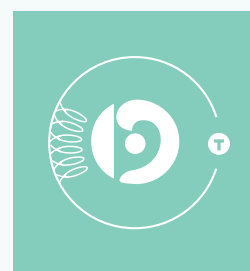


## 2) 안내설비

-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음성안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난청인이 음성안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집단보청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.
- 전광판 등을 이용한 문자안내 표시는 방송과 같은 음성, 안내를 듣지 못하는 다수에게 반드시 필요한 설비이다.



▲ 안내견 허용



▲ 집단보청장치